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이종욱 · 이양수 · 김승수
송언석 · 신동욱 · 박덕흠
최은석 · 안철수 · 이종배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희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채취로 한정한다)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이 항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u> <u>(「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u> <u>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채</u> <u>취로 한정한다)하는 행위. 다</u> <u>만, 관리청이 항만을 효율적</u> <u>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u> <u>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u> <u>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u> <u>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포획·채취를 허용하는 경우</u>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u>② ~ ⑤</u> (현행과 같음)
3. (생 략) <u>② ~ ⑤</u> (생 략)	